

# 등록·신고 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

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이하 화평법) 등록·신고정보 공개제도가 확대 시행(25.8.7)됨에 따라 등록·신고신청인이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·신고정보 중 공개대상(아래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일부) 정보가 공개됩니다. 이에 따라 등록·신고신청인께서는 공개대상 정보 내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확인 결과,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니, 아래의 정보공개 범위와 자료보호 요청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의 확대내용

- (공개 대상) 화평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되는 화학물질(25.8.7. 이전 등록·신고자료 중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(환경부고시 제2015-92호)을 제외한 등록·신고된 화학물질

※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에 대한 공개 및 자료보호 요청 안내는 별도 공지완료

(2026. 09. 15. '1단계' 등록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' 참고)

- (정보공개 범위)

[등록] 화평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가~사목

- 가.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
- 나.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
- 다.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
- 라. 등록형태(연간 제조·수입량의 범위,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여부 등을 말한다)
- 마.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
- 바.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
- 사.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

[신고] 화평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제2호

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(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.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.

※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가~다목

- 가.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
- 나.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
- 다.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

- (확인사항) 공개대상정보에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
## 2 자료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

- (대상) 「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 
(이하 “자료보호규정”)의 제11조의2(자료보호 요청의 특례)에 따른 확대된 공개정보

- (자료보호요청 범위)

[등록] 화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 가~바목

- 가.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
- 나.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 (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 포함)
- 다. 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
- 라.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(단, 제5호(시험방법 및 결과)에 관한 자료 제외)
- 마. 위해성에 관한 요약자료(단, 제6호(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) 제외)
- 바.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(연간 제조·수입량의 범위, 등록 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)에 관한 자료

[신고] 화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 가~나목

- 가.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
- 나.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 (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 포함)

- (절차)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 
및 증빙자료, 첨부자료 등을 제출

※ [등록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자료보호요청 대상은 아니나, 상기 공개 정보 중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에 해당하여 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(등록 [shj6826@korea.kr](mailto:shj6826@korea.kr))로 공문 송부. (개인정보보호 신청업체정보등록 업체명 등, 등록번호, 보호요청 상세(대상정보 및 위치) 및 사유 포함)

- (방법) 자료보호특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점검 후, 자료보호요청서 및  
영업비밀 입증 자료 등을 제출

\* 붙임. 자료보호 요청 절차 및 요청서 작성방법 안내문 참조

- (문의처) [등록]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(032-560-8693, 8694)

[신고]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(032-590-5565~5567, 5569, 5562~5563)

## 3. 자료보호요청서 제출 기한 : 2026년 10월 28일 ~ 2027년 4월 27일 (6개월)

※ 자료보호 요청 기한 내 제출된 건에 한하며, 기한 내 미제출 건은 정보 공개 예정

붙임 1. (등록) 자료보호요청 절차 및 작성방법 안내

붙임 2. (신고) 자료보호요청 절차 및 작성방법 안내